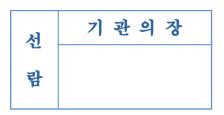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

제775호 2022. 4. 21.(목)

01	범	М	
ш	Н	М	¥.

- 사천시 공고 제2022-557호 시천시 지활가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—1
- 사천시 공고 제2022-558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인정지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

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-----18

○ 사천시 공고 제2022-559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

조례 시행규칙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----24

## 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22-58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———30

회					
람					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제 775호

사천시 공고 제2022 - 557호

「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21일

사 천 시 장

#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고,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 삭제(안 제4조의1)

나. 인용 조문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5조 및 제8조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제 775호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 홈페이지 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〉법무행정종합정보〉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 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2612,

FAX: 831-6022)

# **^1 천 시 공 보**

제 775호

입법여	∥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						
<ul> <li>□ 자치법규명: 「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</li> <li>○ 성명(단체명):</li> <li>○ 주 소:</li> <li>○ 전화 번호:</li> </ul>							
조례안 내용	의 견	비고					

제 775호

###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2022 - 제 호 번호

제출연월일: 2022. 4. .

제 출 자: 주민생활지원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고, 조례 운용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 삭제(안 제4조의1)

나. 인용 조문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5조 및 제8조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#### 제775호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 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혁신법무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2. 4. . ~ 2022. 5. .(20일 이상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제 775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#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금"을 "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"으로, "사용한다"를 "운용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조제10호를 제2호로하며, 같은 조 제3조제11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3조제12호를 제4호로하며, 같은 조 제3조제1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 제3조제14호를 제6호로하며, 같은 조 제3조제1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15호) 중 "시장"을 "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(단, 제8호는 제외한다.)

#### 제 775호

제4조제3항제1호 중 "시금고"를 "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 금고"로 한다. 제4조의1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제3조제6호"를 "영 제26 조의4제9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"법 제18조의2"를 "법 제18조의6"으 로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 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제8조제1항 중 "제3조제2호"를 "영 제26조의4제4호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자활기금운용심의원회"를 "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13조의1, 제14조,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 초생활보장법 .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 라 자활기금의 설치와 관리 • 운 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자활기금(이 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국 · 도비 보조금
- 2.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
- 3.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
- 4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- 5.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 로부터의 장기차입금
- 6.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 입
- 7.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 는 수익금
- 8.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

개 정 아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: 제18조의7제1 항에 따른 사천시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.

<삭 제>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제3조(기금의 용도) 자활기금(이

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-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<삭 제> 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15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 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- 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- 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- 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- 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 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- 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| <삭 제>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 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
하 "기금"이라 한다)---------- 유용하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(단, 제8호는 제외한다.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
- 나.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 자금 채무
- 8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 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 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 험법」,「국민연금법」, 또 는 「고용보험법」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- 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
10. ~ 14. (생 략)

- <u>15</u>. 그 밖에 <u>시장</u>이 수급자 및 <u>7</u>. ----- <u>사천시장(이하 "시</u>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 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(생 략)
  -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③ ------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<삭 제>

<삭 제>

- 2. ~ 6. (현행 제10호부터 제1 4호까지와 같음)
- 장"이라 한다)-----
- 제4조(기금의 관리 운용) ① · ② 제4조(기금의 관리 운용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  - 1. <u>시금고</u> 금융기관에 예치 1. <u>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</u>

- 2. ~ 4. (생 략) ④ (생략)
- 제4조의1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 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· 기관 · 단체 등으로서 다 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 자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
  - 2. ~ 4. (생 략)
  - 5.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 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 행할 수 있는 개인 · 기관 · 단 체
  - 6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6. 법 제18조의6---

금고					
----	--	--	--	--	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제5조(지원대상)	
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
  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영 제26조의4제9호---

채용기업

7. (생략)

제8조(기금의 대여) ① <u>제3조제2</u> 호에 따른 기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 서 사업규모, 사업 계획의 타당 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제12조(기금의 운용 심의) ① 기 저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<u>자활기</u> 금운용심의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 그 기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. ② (생략)

제13조의1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임)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「지방회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4조(기금의 결산) 시장은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 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·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\_\_\_\_

	7. (	(현행과	같음)
--	------	------	-----

제8조(기금의 대	대여)	세262	<u> </u>
<u> 의4제4호</u>		 	-
		 	_
		 	_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세12조(기금의	운용	심의)	①
		<u> 자활기</u>	]금운용
<u>심의위원회</u> -			

② (현행과 같음)<삭 제>

<u><삭 제></u>

<u>제15조(관계 규정의 적용) 이 조 <삭 제></u>

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 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」 및 「사천시 예 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따른다.

<u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</u> <u>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</u> 한다. <삭 제>

### 관 런 법 규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#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- 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적립금액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
 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.
- 제26조의3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- 1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

- 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- 3.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- 4.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
- 5.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
- 6. 기금의 운용수익
-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보조할 수 있다.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- 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塡)
- 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- 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- 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- 5.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- 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- 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
- 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- 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사업
- 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- 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- 제26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기금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 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  -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・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 775호

사천시 공고 제2022- 558호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 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21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폐지이유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유사 목적의 다양한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본래의 취지 와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

제 775호

### 3. 의견제출

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 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〉행정정보공개〉법무행정종합정보〉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

전화: 831-2612, FAX: 831-6022)

제775호

임번예기	고 사항에	대항	의겨서
H H 11-	<u> </u>	~   <u>1</u> '	~ ~~

- □ 자치법규명: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  - 성명(단체명):
  - O 주 소:
  - O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제 775호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

변호 2022 - 제 호

제출연월일: 2022. 4. .

제 출 자: 주민생활지원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 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폐지이유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유사 목적의 다양한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

가. 관련법규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: 잔여 예산 일반회계로 전출

다. 합의: 기획예산담당관, 혁신법무담당관

#### 제775호

#### 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 - 가) 기 간: 2022. 4. . ~ 2022. 5. .(20일 이상)
  - 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  - 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- 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제 775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잔액 및 융자금의 회수 수입 등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.

제 775호

사천시 공고 제2022- 559호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21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폐지이유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에 따라 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| 폐지

제 775호

이 폐지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 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 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〉행정정보공개〉법무행정종합정보〉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

전화: 831-2612, FAX: 831-6022)

제775호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  - 성명(단체명):
  - **O** 주 소:
  - O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제 775호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의 안

2022 - 제 호 번호 제출연월일: 2022. 4. .

제 출 자: 주민생활지원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 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폐지이유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에 따라 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 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「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폐지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: 잔여 예산 일반회계로 전출

다. 합의: 기획예산담당관, 혁신법무담당관

#### 제775호

### 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 - 가) 기 간: 2022. 4. . ~ 2022. 5. .(20일 이상)
  - 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  - 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- 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제775호

사천시 규칙 제 호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 행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775호

사천시 고시 제 2022 - 84호

### 공유수면 점용 ·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·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2. 4. 21.

# 사 천 시 장

- 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: 제2022-2호
- 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2년 3월 11일
- 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2020년 어촌뉴딜사업(중촌항) 물양장 확장 및 선착장 설치공사
- 4. 점용・사용의 장소(공사장소)
  - O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-24번지선 일원
- 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2. 3. 11. ~2051. 12. 31.
- 7. 점용ㆍ사용 승인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

가. 성 명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

- 8.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 - 신고번호 : 제2022-4호
  - **○** 공사기간 : 2022. 4. 8. ~ 2023. 1. 23.
- 9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22. 4. 8.
- 10. 점용・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O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